

연간 66조원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가의 소득수준은 열악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발표한 「2007년임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8,501천원으로 전년 대비 2.4%(655천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농가(31,967천원)의 89.2%, 어가(30,668천원)의 92.3% 수준으로 농·임·어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2007년말 현재 임가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35,671천원으로 농가(29,946천원), 어가(34,407천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산은 365,149천원으로 농가(395,981천원)보다는 낮고, 어가(226,185천원)보다는 높으며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9.8%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부채가 농·어가보다 높은 것은 임업이 농어업 보다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가가 임업경영을 통해 얻은 총 수입은 16,365천원이며 이중 경영비를 제한 임업 소득은 8,992천원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오업소득(10,406천원), 어업소득(11,975천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농·어업의 집약적 경영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업총수입의 구조를 살펴보면 반, 뿔은 감,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생산 소득이 전체 90.3%를 차지하고 목재생산 5.2%, 임산물채취 4.3%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기 소득임산물생산 소득이 임업총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05년 86%', '06년 89%'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단기소득임산물이 임가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임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소득임산물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업종별 임가의 소득은 표고배암이 31,677천원으로 가장 높고, 경영주 연령별로는 40대가 36,611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은 21,248천원으로 평균 소득 7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의 경우에도 40대가 61,880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청**

문의: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황 효 태 사무관 (042-481-4166)

산림내 방치된 도로, 산림경영/휴양 위한 숲길로 부활

- 산림청, 전국 500여km 산림내 방치도로 구조개량 통해 640억 예산절감하고 산림휴양 공간 확대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철탐진입로, 광산용 도로, 군 작전도로 등으로 개설되었다가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산림 내 각종 방치도로를 구조개량을 통해 산림 경영관리, 임산물 운송, 산림휴양을 위한 숲길로 개발하여 활용키로 했다.

산림청이 지난 4월~5월까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조사한「산림 내 타용도 목적의 도로시설 현황」에 따르면 철탐진입로, 광산용 도로, 기타 작업로 등 각종 산업용으로 개설했으나 현재는 방치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산림 내 방치도로는 전국적으로 512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청은 이들 방치도로를 임도로 편입하여 내년부터 구조개량사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 임산물 운송, 산림휴양을 위한 산책, 등산, 산림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처럼 500여km에 이르는 산림 내 방치도로를 임도로 구조 개량하여 활용할 경우 임도를 신설하는 비용에 비해 약 64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국의 임도밀도를 평균 0.1m/ha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올해 전국의 산림내 방치도로를 전국 간선 임도망에 포함시켜 임도로 편입시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조개량을 추진하여 임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임도는 산림의 경영관리와 보호를 위해서 설치되는 산림 내 도로로 '07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16,267km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2.5m/ha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임도가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전국 임도밀도를 8.5m/ha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 현재의 정부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임업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참 뒤진 실정이다.

아울러 임도는 산림경영관리를 위해 설치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히 산불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로이며, 산간벽지에서는 마을 사이를 연결하고, 임산물채취 등 소득원을 개발하는 도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을 찾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임도를 이용한 산책과 등산은 물론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등 산림레포츠 공간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재**

문의 : 산림청 치산복원과 김인호 주무관 (042-481-4276)

마을숲, 희귀목, 숲길, 산림문헌 등 산림문화자산 지정 추진

- 산림청,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위해 5월부터 실태조사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역사성, 희귀성이 높거나 형상이 특이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마을숲, 희귀목, 옛 숲길, 산림관련 고전/문헌/구전 등과 같은 유·무형의 각종 산림자산을 발굴하여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산림휴양시설이나 산촌마을과 연계한 산림관광 및 산림체험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주5일 근무제와 소득증가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에 존재하는 생태, 문화, 정신적 문화자산을 활용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 전국의 다양한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여 주변의 산림휴양자원이나 산촌마을과 연계한 종합적인 산림문화·휴양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산림관광·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 나무, 숲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국보, 천연기념물 등과 같은 산림문화재는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봉표나 농서, 목재관련 자산 등 많은 산림문화자산은 부분별한 개발과 무관심으로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있어 이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자체,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국립수목원 연구진과 지방산림청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산림문화자산 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5월부터 전국 국유림에 대한 관련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등 1차 실태조사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과도 연계하여 전국을 5대 권역(북부, 동부, 중부, 서부, 남부)으로 나누어 오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국의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산림보호법에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규정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현재 산림청이 발굴하여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산림문화자산은 지정 주체별로

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과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산림문화자산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는 숲, 수목, 자연물, 기록 등과 같은 7개 분야의 유형자산과 구전, 정신과 같은 2개 분야의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나 보호구역은 산림문화자산에서 제외된다.

산림청은 5월부터 시작되는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지정신청을 접수 받는다.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 지정 이메일(idea@forest.go.kr)을 통해 지역에 존재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정보(소재지, 사진, 신청사유 등)를 보내면 현장조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산림**

문의: 김 평 기 산림청 휴양등산과 주무관 (042-481-4216) / 주 진 순 국립수목원 박사 (031-540-1041)

산지이용, 정부규제는 줄이고 지자체 권한은 확대된다.

- 산림청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오는 7월부터는 관광·휴양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지이용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적용 허가권한은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ha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 (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75%)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보전산지 면적이 많았던 시·군·구에서의 산지개발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국유림 이용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산림면적 비율이 높은 시·군(산림률 60%, 국유림률 30%이상)에서는 사업지내 국유림 편입비율



현행 30%에서 80%로 대폭 높여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유림의 활용도를 한층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27개 품목으로 한정했던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품목을 5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임업 소득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산지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산지개발이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변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대폭 축소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전용, 기존공장의 증·개축, 660평방미터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여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없애도록 하였다.

※ 연접개발제한 :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예정지와 종전의 산지 전용지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ha를 초과하지 못함(3ha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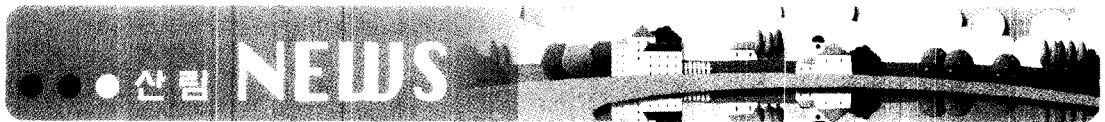
다섯째, 개발 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에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200ha 이하의 산지전용허가는 시·도지사, 200ha 이상은 산림청장 권한임

한편,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지이용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용산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은 산림청의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오는 6월말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황폐한 산림에 사방과 조림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노고하 성공국을 이룩하였으나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다소 인색했던것이 사실' 이라면서 '앞으로는 가꾸고 지켜야 할 산림과 기업의 경제활동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할 산림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지 정책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이번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의미를 밝혔다. **산림**

문의 : 산림청 산지제도와 김 원 수 사무관 (042-481-4141)



산림면적은 줄고, 산주(山主) 수는 늘고

- 산림청, 전국 산림 소유현황 분석

산림청(청장 하영제)의 '전국 산림 소유현황' 전국 산림소유현황의 산림면적(6,642천ha)은 행정안전부의 지적 전산자료에 의한 임야면적을 의미하고, 임업통계연보의 산림면적(6,382천ha)은 산림자원법에 의한 실제 산림면적을 의미하므로 산림면적이 서로 상이하며, 산주의 수도 소유규모별·지역별 조사방법에 따라 산주의 중복이 있어 산주수가 상이함에 따르면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의 사유림 면적은 4,391천ha이고, 필지수로는 1.1ha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중 3ha미만의 산림을 송부하고 있는 산주가 84%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면적은 전체 사유림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림면적 소유현황이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남산면적(339ha)의 26배가 넘는 9천여ha의 산림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유림의 경우 국가의 사유림매수 등으로 매년 13,5천ha가 늘어났으나, 사류림은 국유림의 편입과 타용도 전용 등으로 22.5ha가 줄어들었다.

소유형태별로 보면 사유림의 76%를 개인(3,344천ha)이 소유하고 있고, 종중(555천ha), 법인(3213천ha), 종교단체(96천ha), 기타단체(66천ha), 외국인(7천ha)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산림 소유 규모는 종교단체가 19.2ha로 가장 많고 법인(12.4ha), 기타단체(산림계, 마을회 등 7.3ha), 종중(5.7ha) 순이었다.

1998년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산림을 소유할 수 있게된 외국인(기관)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남산면적(339ha)의 4배가 넘는 1,388ha의 산림을 취득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산주도 1,300여명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체 산림면적의 21%가 경북(1,371천 ha)에 소재하고 다음으로 강원(1,366천ha), 전남(709천ha), 경남(709천ha), 경기(555천ha) 순이었으며, 사유림의 경우는 경북(999천ha), 전남(591천ha), 경남(585천ha), 강원(492) 순으로 나타나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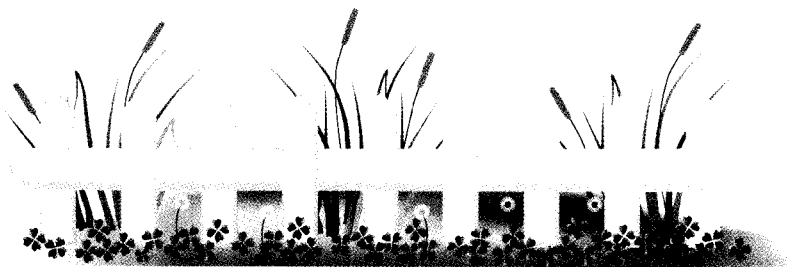
원의 경우 국·공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지역별 산주수는 전남(390천명)이 제일 많고, 경북(339천명), 경남(310천명), 충남(255천명)순이었으나, 전남의 경우 산주 1인당 산림면적은 1.5ha로서 전체 평균(2.2ha)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유규모가 특히 영세하였으며, 경북은 산주 1인당 2.9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유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말 기준 전체 산주 2,013천명 중 절반가량인 49%가 부재산주이고, 부재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68%), 제주(64%), 강원(60%), 부산(57%), 대전(55%), 울산(54%), 충남(52%), 충북(51%) 순이었다. 반면, 대구(27%)의 경우 부재산주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북(38%), 광주(40%)의 경우도 전체평균(49%)에 미치지 못하였고,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은 50%인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운영균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토의 정서에서 인정한 탄소배출 흡수원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말하고 '이러한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 산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산주들이 숲을 가꾸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

문의: 산림청 경영지원과 김대훈 주무관 (042-481-4156)



산림훼손 막는 자연친화적 수목장 제도 26일부터 시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월 26일부터 시행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수목장 제도가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목장은 최근 무분별한 묘지 및 납골묘 설치에 의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골 외에는 유품 등 어떠한 물질도 함께

묻을 수 없으며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만 수목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수목장은 급경사지나 붕괴·침수 우려지에는 조성할 수 없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안림,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조성하여 고시하는 공설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개인·가족은 100㎡미만, 종중·문중은 2,000㎡이하, 종교단체는 3만㎡이하, 법인은 10만㎡이상의 규모로 조성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수목장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의 모델 수목장림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조성중인 모델 수목장림은 07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진입로 개량 공사 및 기반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에는 산림공원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성관 숲가꾸기와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수목장림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위탁관리 전문 공공법인을 선정하는 한편, 이용료 및 분양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확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설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사설 수목장림을 이용할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수목장림이 관할 시·군에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

문의 : 산림청 휴양등산과 김 평 기 주무관 (042-481-4216)

농산촌 지역주민, 국유림 잘 이용하면 고소득 가능

- 산림복합경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등산로 정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전덕술)는 2008. 5. 28일 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양구군청, 양구군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 국유림을 이용하여 농·산촌 지역주민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이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산림



병해충 예찰 등 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와 고로쇠수액, 잣 등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산양삼(장뇌)이나 더덕, 곰취 등 청정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산림복합경영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구군 동면 팔랑리 지역 국유림을 포함한 산림 74ha를 산채채취 체험장으로 조성 양구군에서 매년 5월중 개최하는 곰취축제와 연계하고, 지역 명산인 사명산을 중심으로 양구읍 웅진리와 월명리를 잇는 약 40km 중장거리 트레일(등산로)을 발굴 조사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한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양구지역 주민이 국유림보허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관리소로 부터 양여 받은 임산물은 송이버섯, 고로쇠수액, 잣이며 2006년부터 양구읍 월명리 마을을 산림복합경영지역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장은 “그동안 국유림 경영은 목재생산 등 단순 고유기능의 유지와 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산림복합경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등산로 정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임업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산림**

문의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정재림 (033-482-1304)

